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

신고 전 유의사항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 통산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21년 5월)에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 ⇨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무·과소 납부한 결과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신고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중소기업·대주주·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해당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신고 세율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신고를 위해서는 ①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와 ②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엑셀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엑셀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거래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정 여부는 거래한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유의사항 등을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1

2. 신고 첨부서류 제출하기 19

I. 주식 양도소득

1. 증권사 HTS → 2. 국세청 홈택스 → 3. 로그인 → 4. 신고/납부 → 5. 양도소득세 → 6. 신고도움서비스 → 7. 예정신고 작성 → 8,9 기본정보(양도인/양수인) → 10.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11. 세액계산 및 확인 → 12. 신고서 제출 → 13. 세금 납부하기

1. 증권사 HTS 배너(또는 홈페이지 배너)

- 배너에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를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

2020년 8월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구분 | 양도일 | 코스피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해당 법인별) | 1.1.~ 3.31. |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 | 4.1.~ |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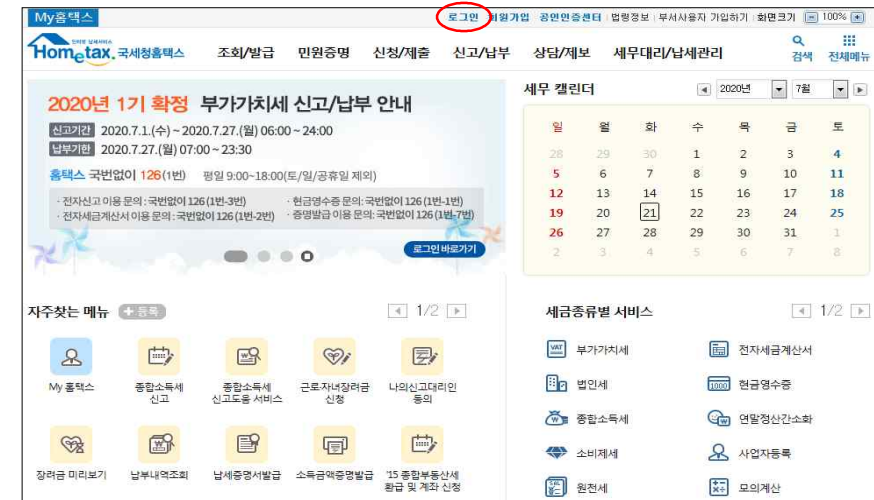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 통산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21년 5월)에만 통산이 가능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정) 국내·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을 통산한 양도 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3.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 로그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범용이나 용도가 제한된 은행, 증권, 보험용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가능

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안내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 저장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비회원 로그인

성명: 비회원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

개인회원이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종류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 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홈택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⑤ 세무공무원의 법 및 제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신고/납부 선택

My홈택스 | 나의메뉴 | 동일연계연 | 테스트계인 | 조회일정보 | 사업장선택 | 로그인 | 공인인증센터 | 법령정보 | 회원관리 | 100%

HomeTax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고/납부 | 상담/정보 | 검색 | 전체메뉴 | 설정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기간 2020.7.1(수) ~ 2020.7.27(월) 06:00 ~ 24:00
납부기간 2020.7.27(월) 07:00 ~ 23:30

홈택스 국번없이 126(1번) | 평일 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전자신고 이용 문의: 국번없이 126(1번-3번) | 현금영수증 문의: 국번없이 126(1번-1번)
· 전자계급계산서 이용 문의: 국번없이 126(1번-2번) | 증명발급 이용 문의: 국번없이 126(1번-7번)

테스트계인3님 | 나의 세부 알리미 | 4월분 원천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특지 수신 0건 | 신고 | 고지 | 채납 | 완급

자주찾는 메뉴

My 홈택스 | 연말정산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환급금조회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나의세무다리인 동의 | 사업자등록 신청 | 근로·사업장 지급명세서 |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종류별 서비스

부가가치세 |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세 | 현금영수증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간소화 | 소비세 | 사업자등록 | 원천세 | 모의계산

5. 양도소득세 선택

HomeTax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고/납부 | 상담/정보 | 검색 | 전체메뉴

신고/납부 | 신고/납부 이용시간 | 신고/납부 이용방법 및 절차 | 세금신고 | 개정세법 해설 | 세금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 신고부속서류제출

신고/납부

홈택스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면 신고 및 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인터넷으로 대신하여 더욱 쉽고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합니다.

신고/납부 이용시간
신고 이용시간: 각 세목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납부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문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매일 07:00 ~ 23:30

신고/납부 이용방법 및 절차

01 세금신고 대상선택 | 02 세금신고 진행 | 03 세금신고 접수확인

· 신고서 작성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

· 신고서 변환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파일생성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오류검증(항식 · 내용검증) 후 제출

· 접수증 확인 · 출력
제출 즉시 접수증 확인 또는 Step2신고내역에서 접수증 확인 · 출력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인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증권거래세
- 주세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해외금융개좌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농어업용기차재판금신청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종합부동산세 환산배제신고

세금 납부 이용절차

01 세금납부 대상선택 | 02 세금납부 진행 | 03 세금납부 확인

6. 신고도움 서비스

HomeTax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고/납부 | 상담/정보 | 검색 | 전체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 상담/정보 | 검색 | 전체메뉴

양도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 Step 2. 신고내역 | Step 3. 삭제내역

·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 06:00 ~ 24:00)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장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Step 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납부서,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일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가장 일반적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특지 권을 통해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매뉴얼) | 신고도움 서비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전자신고 카미도북 | 비사업종도지 신고안내

· 간편신고
한 개의 부동산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 일반신고
모든 신고 이용 가능

· 증빙서류제출
신고서 제출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후,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약서 등 신고 관련 증빙서류를 PDF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는 9월에만 가능합니다.

6-1.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물건 조회

- ① 신고안내연월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시) 상반기 양도분 → 금년 8월, 하반기 양도분 → 다음해 2월
-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발송된 신고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MY NTS]-[우편물 및 소명안내]

6-2. 주식등 거래내역 조회(※ 상장법인 대주주만 해당)

- ①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증권사로부터 수집된 주식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거래기간과 거래구분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1)~3) 유형 중 사용 목적에 따라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 ☞ 1) 증권사 원본자료 다운로드
 - 2)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업로드용
 - 3) 주식거래내역 업로드용
- ※ 2),3)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업로드용 서식에 일부 항목을 미리채움 (Pre-filled)하여 제공합니다.

7. 예정신고 작성

7-1. 팝업창 닫기

8. 기본정보 입력(양도인)

- ① 국내/국외 자산을 구분합니다.
- ② 양도자산을 예정-국내주식으로 선택합니다.
- ③ 양도연월(2020년 상반기)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④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⑤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기본정보 입력(양수인)

- ① 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 지분을 입력합니다.
 ※ 증권시장안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등 양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 ② 양도자와의 관계가 '무관계'가 아닌 경우,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③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④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 목록에서 (☑)클릭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⑤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① 주식등 종목명(또는 코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물건 종류(코드), 세율구분, 주식등 종류코드, 취득유형,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를 입력합니다.
- ②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감면을 까지 입력)
*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여' 를 선택합니다.
- ③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0-1. 양도자산 목록 및 (대주주)주식거래내역서

- ④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도자산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클릭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 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업로드서식, 작성방법, 양도물건종류별 세율코드 및 주식 종류 확인가능
- ⑥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 [주식거래내역서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⑥-1 확인 버튼을 클릭 후 ⑥-2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등록·저장합니다.
- ⑦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 ①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 ②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1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팝업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한도 연간 250만원)
- ③ [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양도 신고서 존재여부를 확인합니다.
 - ☞ 기신고서의 양도자산이 단일세율대상인 경우 합산신고가 불필요하며, 누진세율인 경우 반드시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
- ④ 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신고서 제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

양도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01. 기본정보(양도인) 02. 기본정보(양수인) 04. 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05. 세액계산및확인 06. 신고서제출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러보기**

| 세율구분 | 합계 | 소계 | 1/1 |
|-----------------|------------|------------|------------|
| 양도소득금액 | 24,000,000 | 24,000,000 | 24,000,000 |
| 기신고결정경정양도소득금액합계 | 0 | 0 | 0 |
| 소득감면대상소득금액 | 0 | 0 | 0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과세표준 | 21,500,000 | 21,500,000 | 21,500,000 |
| 세율(%) | | | 20.00 |
| 산출세액 | 4,300,000 | 4,300,000 | 4,300,000 |
| 감면세액 | 0 | 0 | 0 |
| 외국납부세액공제 | 0 | 0 | 0 |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0 | 0 | 0 |
| 원천징수세액공제 | 0 | 0 | 0 |

| 기신고, 경정, 과정세액, 조정과제 | 0 | 0 | 0 |
|---------------------|-----------|-----------|-----------|
| 납부할세액 | 4,300,000 | 4,300,000 | 4,300,000 |
| 소득세감면세액 | 0 | 0 | 0 |
| 세율 | 0.00 | 20.00 | 20.00 |
| 외국납부세액 | 0 | 0 | 0 |
| 산출세액 | 0 | 0 | 0 |
| 수정신고가산세액 | 0 | 0 | 0 |
| 기신고, 경정, 과정세액 | 0 | 0 | 0 |

분납 및 자전납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이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54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16> 자전납부할 세액 4,300,000 원

<17> 분납 분납할 세액 0 원

<18> 자전납부세액 4,300,000 원

<25> 자전납부할 세액 0 원

<26> 분납 분납할 세액 0 원

<27> 자전납부세액 0 원

환급금 계좌번호(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과금 과납액

계좌번호

이전 **신고서 제출**

-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양도소득세

| <16> 자전납부할 세액 | <17> 분납 분납할 세액 | <18> 자전납부세액 |
|---------------|----------------|--------------|
| 18,510,901 원 | 8,510,901 원 | 10,000,000 원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양도소득세

| <16> 자전납부할 세액 | <17> 분납 분납할 세액 | <18> 자전납부세액 |
|---------------|----------------|--------------|
| 24,169,949 원 | 12,084,974 원 | 12,084,975 원 |

- 메시지 확인 후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메시지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명서류는 '양도소득세' 탭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 하셔야 합니다.

확인

알려지지 않은 메시지

접수중을 확인한 후에 [Step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일 증명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 신고서 접수 완료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중

사용자 ID: wls_juser111 사용자명: 테스트계정3

접수번호: 210-2020-2-60000054262 접수일시: 2020-01-15 16:37:27 접수결과: 정상

채움내역

| 산출(상당) | 테스트계정3 | 사실자(주변)등록번호 | 000101-***** |
|--------|-------------|-------------|-----------------|
| 신고서 종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 접수방법 | 인터넷(작성) |
| 원부양서유 | 1통 | 신고구분 | 매달(통간매달) / 정기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워와 값이 접수되었습니다.

관주 상세내용 확인하기

상세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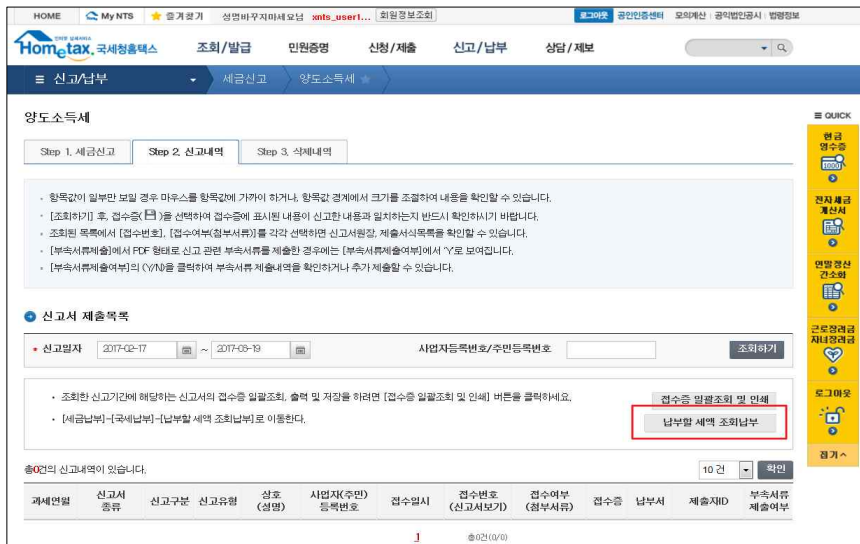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장게좌확인) 닫기

13. 세금 납부하기



- ①접수 상세내역 확인하기 클릭 후 ②Step 2 신고내역 선택

13-1.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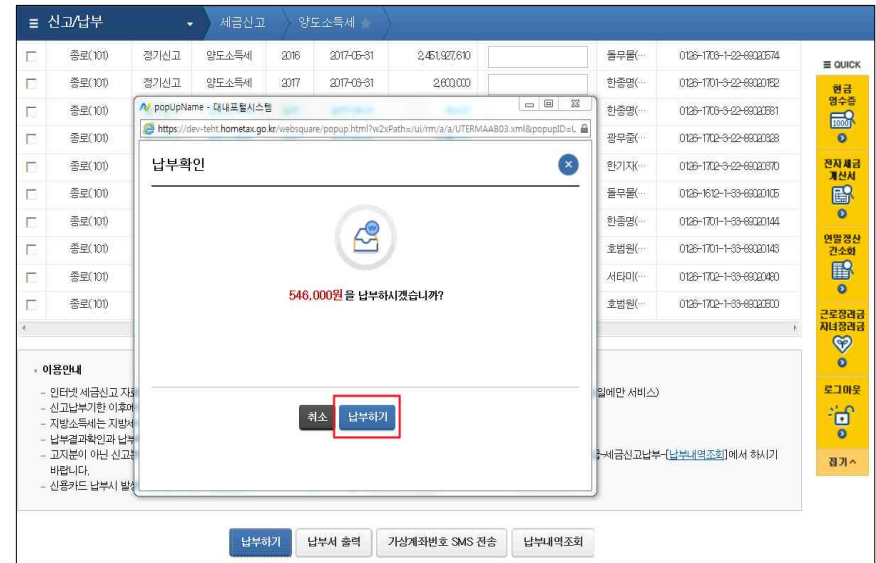


13-2. 납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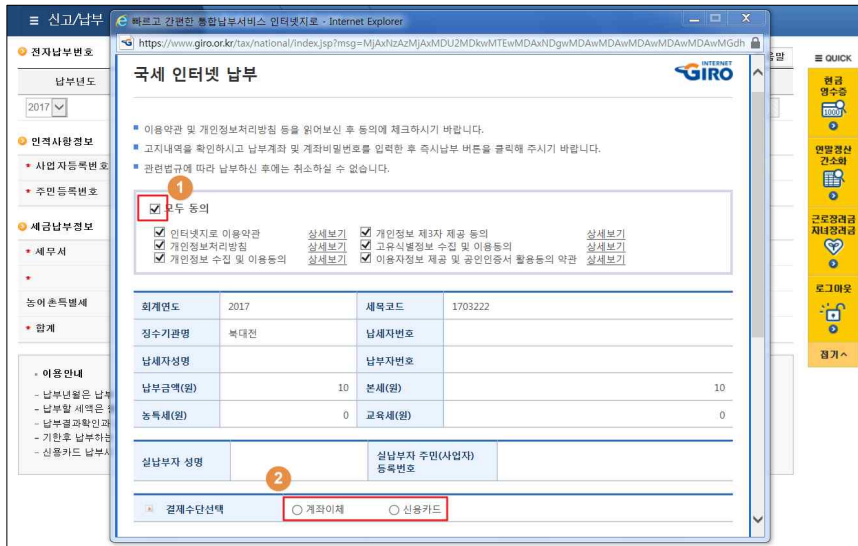


- ①납부세액 입력 후 ②납부하기 클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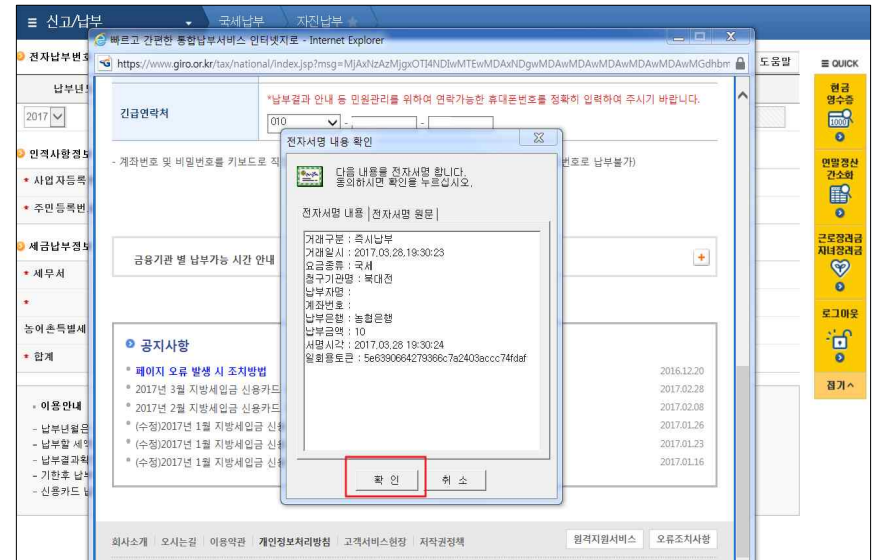
13-3. 납부금액 재확인 메시지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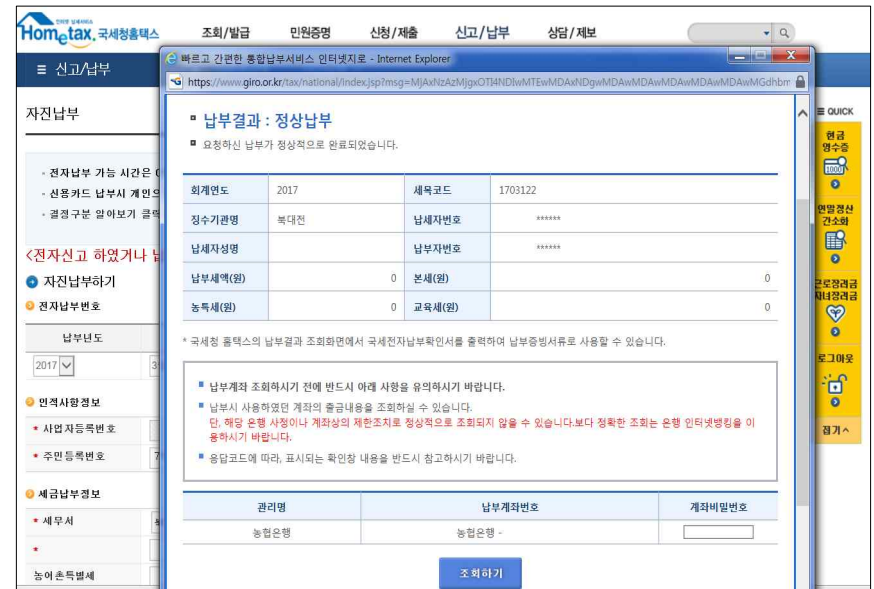
13-4. 국세 인터넷 납부



13-5. 전자서명 내용 확인



13-6. 납부결과 확인(완료)



- ①모두동의 클릭 후 ②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 ③납부 내역을 입력 후 ④납부하기를 클릭하세요.

II. 신고 첨부서류 제출하기

1. 증권사 HTS → 2. 국세청 홈택스 → 3. 로그인 → 4. 신고/납부 →
5. 신고부속서류 제출 → 6.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 → 7. 부속서류 업로드

1. 증권사 HTS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

2020년 8월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구분 | 양도일 | 코스피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해당 법인별) | 1.1.~ 3.31. |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 | 4.1.~ |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 통산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21년 5월)에만 통산이 가능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정) 국내·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을 통산한 양도 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상당문의 국번없이 126번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4. 신고/납부 화면까지는 '주식 양도소득' 화면과 동일

5. 신고부속서류 제출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with the '신고/납부' menu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sections for '신고/납부 이용시간' (Reporting/Payment Usage Time),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 (Reporting Method and Procedure), and '세금신고' (Tax Reporting). The '신고부속서류제출' button is highlighted in red in the bottom left navigation area.

6.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

The screenshot shows the '신고부속서류제출' page. It includes a '제출대상 신고목록' table with columns for '신고일자' (Reporting Date), '세목' (Categor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제출지' (Reporting Location). The '제출하기' button is highlighted in red. A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various utility icons like '원금 환수' (Refund) and '로그아웃' (Logout).

7. 부속서류 업로드

신고 부속서류제출

- [파일찾기]로 부속서류(증빙서류 포함)를 불러오면 왼쪽 제출대상 파일목록에 보입니다.
 -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므로, 이미지 파일(jpg,bmp,gif,tif,png 등)은 [파일변환]을 통해 PDF로 변환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한 내용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부속서류는 한번 제출시 50M로 제한되니, 50M 초과시에는 2개 이상의 파일로 나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속서류 제출하기] 후 추가제출할 경우, 제출내역의 [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로 계속 제출 가능합니다.

* 부속서류 선택
 * 첨부서류
 - 대상 파일선택

1 [파일찾기] - PDF뷰어

| <input type="checkbox"/> | NO | 제출파일명 | 파일크기 |
|--------------------------|----|------------------|--------|
| <input type="checkbox"/> | 1 | 4WvBgbbnV[1].jpg | 3.85KB |

2

※ 동일한 파일은 한 번만 첨부됩니다

3

삭제 [파일변환]

4

닫기 [부속서류 제출하기]

※ 부속서류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파일로도 첨부가 가능합니다.